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776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소송대리인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4. [redacted]국
피고(탈퇴)	D 주식회사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피고들에게 배분한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redacted]지방법원은 2020. 10. 30. [redacted]시 H 대 173.4㎡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G)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다만, 피고 주식회사 C는 I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 채권을 양수하였고,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매각건물 2층(상가) 일부를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근저당권자인 J조합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배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제되었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K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L는 K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전 대표자는 M인데, K과 형제간이다.

(2)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기간을 거쳐 2018. 3. 5.부터 2년간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갱신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2018. 3. 9. K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2018. 3. 9.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K과 원고의 대표자는 부부 사이로서 2018. 3. 9. 송금한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 3. 5.자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다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판사 [redacted]